

공인탐정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 봉 수** · 추 봉 조***

〈요 약〉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도입시 조사영업의 합법화와 경비, 조사시장의 활성화로 약 4,877억원의 매출이, 장기적으로는 1조 2,724억원의 매출효과가 연구발표되었다.

탐정업의 도입필요성은 “미래 유망분야의 새로운 직업”으로 선정되어 ‘신직업’으로 보고 있고,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공인탐정제도’는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현재 계류중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탐정들의 사실조사가 가능해 진다.

최근 국회에 ‘공인탐정법안’,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탐정제도는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물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 교육, 영업 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탐정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청년의 일자리와 퇴직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적으로 조사 관련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탐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다 보면,업무의 혼란으로 더 큰 우려가 야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관련 직군과의 업무의 충돌문제도 열린 새로운 연구와 제도 및 정책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원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왜 탐정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지,

* 이 논문은 김천대학교 2018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저자)

*** 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탐정과 일자리 창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 자격면제 기준에 왜 엄격한 법제화가 필요한지, 공인탐정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지 크게 4가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여, 첫째, 헌법재판소의 탐정유사명칭 사용금지와 치안수요의 한계에 대한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조속한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음성화로 사회적 문제점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셋째, 공인탐정자격 면제 기준의 문제를 엄격한 법제화를 통해 탐정 제도의 도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 공인탐정업,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민간보안산업

목 차
I. 서론
II. 공인탐정법률(안) 도입 현황 및 필요성
III. 공인탐정법률(안) 주요내용
IV. 공인탐정법률(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V. 결 론

I. 서론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에서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법취지에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부작용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성과 다양한 범죄행위로부터 공권력 이외의 대체적 수단으로 이룰 수요에

부응하려는 시스템으로 공인탐정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황요한, 2017)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선진 국가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공인탐정업무가 이루어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국 실정에 맞게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완영, 2017)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실업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탐정업의 허용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강동욱, 2018)

국내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사실조사를 대행하는 용역 형태의 업체들은 자유업 형태로 산재해 있으며, 국세청 과세기준을 위한 업종 분류표에서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탐정, 경호 및 경비업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성용, 2015)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부분의 활성화와 개인능력의 신장과 창달에 이바지 하고 있는 외국의 탐정산업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며, 유사탐정업자들의 지속적인 증가와 난립으로 공권력 에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로 업체들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황요한,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도입현황 및 필요성, 주요내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공인탐정법률(안) 도입현황 및 필요성

1. 공인탐정법률(안) 도입현황

그간의 국회 입법 논의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98년 하순봉 전 의원에 의한 「공인탐정법안」이 제출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이상배의원의 「민간조사법안」, 2006년 최재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2008년 이인기 의원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성윤환 의원, 이한성 의원, 강성천 의원의 「민간조사업법안」, 2012년 윤재옥 의원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윤재옥 의원의 「경비업법 전부개정안」, 송영근 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2015년 윤재옥 의원의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공인탐정법안」, 2017년 이완영 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발의 되었다.

탐정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이전까지 10여차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폐기되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완영 의원이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윤재옥 의원이 「공인탐정법안」을 제출하여 현재 상정되어 있다.

탐정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입법사항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고, 법률안의 형태별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경비업법」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을 통해 발의되었다.

역대 국회에서 탐정업의 제도화 방향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원인은 경찰청과 법무부 간 탐정업의 관리, 감독 권한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단일한 의사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행정안전위원회, 2016)

2. 공인탐정법률(안) 필요성

공인탐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음성적인 민간조사 업체들을 양성화 하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정보법」 제40조에 제4호 및 제5호에 의해 탐정업의 전형적인 업무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인탐정법안들이 통과한다면 부칙에서 제4호, 제5호가 삭제되어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탐정업도 수행이 가능해 진다.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적절한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탐정에 대한 제도, 관리, 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탐정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것은 이미 제안이유를 밝혔다.

두 번째로는 일자리창출로 인한 청년실업률의 증가와 퇴직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의 청년 실업률은 많은 연구자료와 공식통계자료들로 심각해져 있다. 대학 진학 또는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 청년들은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로 그 숫자는 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명연장으로 인해 60세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만족스러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탐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탐정들은 다양한 분야, 전공을 살려 사실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국가 공권력에 의한 조사에서 전문적인 사실조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국가공권력과 사실조사간의 새로운 상호협력관계가 생길 수 있다. 경호, 경비, 탐정업등이 결합된 보안업체들과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조력자, 외부기관들간의 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을 하게 된다면 범죄 예방 및 분석에 새로운 컨트롤 타워가 생길 수 있다.

Ⅲ. 공인탐정법률(안) 주요내용

2016년 9월에 입법발의 된 윤제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과 2017년 7월 입법발의 된 이완영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두 법안을 비교분석하여 보면 첫째, 두 법안에서는 탐정의 정의에 있어서 ‘사실조사를 의뢰받는 경우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탐정업은 (i)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대상의 제한), (ii) 의뢰된 사실과 관련된 정보수집과 사실관계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것(업무의 한정)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외에 두 법안에서는 (iii) 탐정활동의 조사내용과 방법이 적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내용과 방법의 적법성), (iv) 법률에서 정한 수집제한대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두 법안은 동법에 의하여 탐정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탐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한다(제2조 제3호). 또한 공인탐정이 아닌 자는 ‘공인탐정,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탐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셋째, 두 법안에서는 공인탐정업에 대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의한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윤의원안에서는 ‘공인탐정법인’(제28조)이라고 하는 반면, 이 의원안에서는 제1조 (목적)에서 ‘민간조사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인의 경우 ‘민간조사법인(제13조)’으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강동욱, 2018)

넷째, 두 법안에서는 탐정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다섯째, 두 법안에서는 탐정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탐정활동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여 가능한 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추구하고 있는 것(제3조)은 비록 선언적인 것이지만 탐정업의 범위 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탐정윤리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여섯째, 윤의원안에서는 탐정업무(제3조)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의원안에서는 탐정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곱째, 두 법안에서는 탐정의 자격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제5조)을 두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이 규정한 소정의 사유로 공인탐정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등을 제외시키고 있다. 다만, 윤의원안에서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저지된 사람’(제6호)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의원안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덟째, 두 법안에서 공인탐정에 되기 위해서는 경찰청이 주관하는 소정의 시험(1차 시험과 2차 시험)합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제6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의원안에서는 1차 시험의 면제대상에 대하여 “1.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 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제7조)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의원안에서는 시험면제대상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제6조 4항) 아홉째, 두 법안에서는 공인탐정의 등록과 관리에 대하여 경찰청이 주관청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열 번째, 두 법안은 공인탐정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윤의원안에서 신청인에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에 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다만 두 법안에서는 탐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내국인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열한번째, 두 법안에서는 공인탐정업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보수와 관련하여 수수료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

만(윤의원안 제13조, 이의원안 제22조), 윤의원안에서는 보수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13조 제3항)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두 법안에서는 공인탐정업자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윤의원안에서는 이의원과 달리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인탐정협회의 설립, 탐정(또는 민간조사)에 대한 관리와 지도, 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은 매우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강동욱, 2018)

이 두 법안의 내용을 재구성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대 국회에 발의된 공인탐정법안 내용 및 비교

윤제욱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 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인탐정	제5조(결격사유), 제6조(공인탐정 자격시험 등), 제7조(시험의 일부면제), 제8조(공인탐정 자격제도 운영위원회), 제9조(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제1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2장 공인탐정	제5조(결격사유), 제6조(공인탐정 자격시험 등), 제7조(공인탐정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제8조(자격증의 양도·대여 금지 등), 제9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3장 공인탐정의 등록	제11조(공인탐정의 등록 등), 제12조(사무소 설치 및 명칭 등)	제3장 공인탐정업의 등록	제10조(공인탐정업의 등록등), 제11조(사무소 설치 및 명칭 등)
제4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의무	제13조(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등), 제14조(사건부의 작성·보관), 제15조(의뢰인의 신분 확인), 제16조(계약사항 서면 교부의 의무), 제17조(수집·조사의 제한), 제18조(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 제19조(업무의 수행원칙 등), 제20조(의뢰범위 초과행위 및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21조(사무원), 제22조(손해배상책임), 제23조(겸직신고), 제24조(등록증 등의 게시), 제25조(비밀의 준수 등), 제26조(공인탐정 및 사무원 교육)	제4장 민간조사법인	제12조(민간조사법인의 설립), 제13조(설립절차), 제14조(구성원 등), 제15조(정관기재사항), 제16조(설립등기), 제17조(명칭 등), 제18조(업무집행방법), 제19조(해산), 제20조(합병), 제21조(준용규정), 제22조(수수료 등),
제5장 공인탐정법인	제27조(공인탐정법인의 설립), 제28조(설립절차), 제29조(구성원 등), 제30조(정관기재사항), 제31조(법인 명	제5장 공인탐정업자의 권리,	제22조(수수료 등), 제23조(조사부의 작성, 보관), 제24조(의뢰인의 신분확인), 제25조(계약서의 작성 및

윤제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		이완영 의원의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청 등), 제32조(설립등기), 제33조(분사무소), 제34조(업무집행방법), 제3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36조(해산), 제37조(합병), 제38조(준용규정)	의무	교부 등), 제26조(수집, 조사의 제한), 제27조(위법한 공인탐정업무에 대한 거부등), 제28조(공인탐정업무의 수행원칙 등), 제29조(등록증, 인가증의 양도, 대여 금지등), 제30조(사무원), 제31조(손해배상책임), 제32조(등록증, 인가증의 게시), 제33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34조(보수 교육)
제6장 공인탐정협회	제39조(공인탐정협회의 설립 등), 제40조(공제사업)	제6장 공인탐정협회	제35조(공인탐정협회의 설립 등), 제36조(공제사업)
제7장 지도·감독	제41조(지도·감독 등), 제42조(자격취소 등), 제43조(등록취소 등), 제44조(청문),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지도·감독	제37조(지도, 감독), 제38조(자격취소 등), 제39조(등록취소 등), 제40조(청문),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IV. 공인탐정법률(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인탐정법률(안) 문제점

1) 탐정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치안수요의 한계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제40조 제4호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정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 2018)

지난 수십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제경제협력기구 35개국 중 탐정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 국제민간조사분야 협업을 통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경찰 시행과 더불어 국민의 치안 수요에 부응 하고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2)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음성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탐정업을 제도화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음성적인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외국 탐정기업들에 대한 음성적인 업체들의 양성화이다.

물론 국가의 공권력의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미아, 실종자 등의 수색을 민간에 떠넘기면서 피해 가족 등의 비용부담에 의존하고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탐정업 도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미 사설경비업의 발달로 경제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국가가 기본으로 담당해야 할 치안서비스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더해 인명과 가족을 보호하는 일까지 경제력에 의한 차이가 발생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정승환, 2018)

물론 우려의 목소리처럼 탐정업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침해로 인하여 현행법의 위반이 우려되지만 탐정업의 활성화로 인해 탐정행위와 관련된 법안들이 서로 개정되어 충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로 국가에서는 사생활을 제한한다면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교통과 관련된 이동수단 자체를 제한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입법여부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기존 변호사, 법무사, 신용정보업 등 탐정업 관련 직역들과의 조화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공인탐정자격 면제기준의 문제

공인탐정법 제5조에서는 19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인탐정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공인탐정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인탐정 자격 면제기준의 법률안은 경찰관으로 퇴직

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부여하게 되는 부분에 논란이 있다. 물론 경찰청에서 탐정을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탐정의 자격에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살펴보면 유착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될 수 있다.

4) 공인탐정업무의 불명확성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탐정’ 또는 ‘민간조사’라는 용어가 혼용 되어 사용되고 있다. 탐정이라는 용어는 영미의 ‘Private Investigator’를 일본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개념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민간조사라는 용어는 ‘Private Investigator’를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정보원, 탐정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범위 밖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강동욱, 2018)

탐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거나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몰래 남의 ‘뒷조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일반적 탐정은 주로 수사업무 보조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고정관념과 달리 현재 다른 나라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탐정업자들을 보면 탐정업은 단순히 드러나지 않은 사실만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산재해 있는 여러 사실을 조사하는 것도 포함되고, 몰래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도 포함되고 있다.(강동욱, 2018)

하지만 현재 우리 법안에는 그러한 업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공인탐정법률(안) 개선방안

1) 합법과 불법의 모호성으로 인한 조속한 입법안 마련

우리나라는 탐정활동이 불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개별 법률을 통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신용조사업, 경비업, 손해사정사, 행정사 등이 도입되어 있지만 각 사안별, 직업별 연관성이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없다. 이 틈을 회색지대에 자격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심부름센

터, 흥신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수요의 팽창을 합법적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 분야를 새로운 직업 창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탐정제도의 입법방식에 관해서는 종래 독립법률을 만드는 방법과 기존의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추가하는 방법이 모색되었다. 그러나 경비업무는 수동적으로 경비 대상을 보호하는 업무임에 반하여, 탐정업무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강동욱, 2018)

탐정업이 산업적 측면에서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적체계가 미흡하며, 신용정보업으로 컨설팅, 심부름센터, 도우미 등 특별한 법적 규제없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입법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정보 회사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탐정업무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인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탐정제도에 관한 법적 규제가 신속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직업 및 일자리 창출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탐정제도의 합법화될 경우 시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국가는 치안비용 절감은 물론 수사기관이 주요한 치안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탐정제도의 신속한 법제화가 요청되는 바이다.(강동욱, 2018)

결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관련 규정은 단지 신용정보회사가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묵시적으로 제한할 뿐이고,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는 탐정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탐정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역시 탐정업무의 범위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이상훈, 2018)

따라서 탐정업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요청되므로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경비업과는 차별이 요구된다. 특히 탐정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범위의 다양성과 방대함으로 인해 직업 창출 차원에서도 국가산업적으로 이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비업

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별도의 독립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강동욱, 2018) 일본의 경우에는 탐정업이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종의 난립으로 인해 무질서가 확산되고, 탐정관련 불법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고,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탐정업에 대한 규제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탐정업에 관한 입법이 시도되었다.(강동욱, 2018)

현재 우리사회에서 탐정업에 대한 이미지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는 우려가 있고, 탐정업에 대한 필요성은 관련 업무자외에는 크지 않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국가에서 직접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

2016년 12월 30일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발간된 『신직업 규제 완화 고용영향평가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조사원이 합법화될 경우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둔화되었다가 장기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윤석천외, 2016). 본 보고서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거시적 관점에서 2016년 기준 민간조사원의 숫자가 3,640명에서 규제가 개선된 이후(3년 후)에는 5,444명으로 3년간 약 49.6%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절하면 민간조사원의 규제완화 이후 3년간 직접 고용 창출 효과로는 1,804명의 고용이 창출되며, 직접효과 이외의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까지 고려하면 총 3,10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송재현, 2017)

새로운 직업 및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치안비용 절감과 시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치안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국내 탐정업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 외국 탐정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와 국가형벌권 감소로 인한 사법적 문제, 음성화되어 있는 일자의 양성화를 통한 고용효과가 증진될 것이다.

3) 공인탐정자격 면제기준의 엄격한 법제화

앞에서 살펴본 이의원과 윤의원의 ‘공인탐정’자격을 취득한 자로 공통하지만 윤의원안에서는 동 법안에 근거하여 공인탐정 자격을 취득한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제2조 제2호)을 구분함으로써 공인여부에 관계없이 탐정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 법안 전반에 걸쳐 공인탐정이 일반탐정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탐정유사업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고, 또한 탐정업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탐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탐정의 업무유형을 보면 사적 거래나 기업관련 업무 등으로 확대되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업무내용도 직업적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에 대하여 경찰이나 법무부 등 수사관련 사법기관에서 탐정업을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탐정업의 효과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탐정업을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일반 산업으로 발전하게 만들고, 탐정업이 특정 정치권력이나 국가 공권력을 유지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권력 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강동욱, 2018)

또한 앞에서 살펴본 공인탐정 자격시험과목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첫째, 공인탐정업무는 의뢰인의 권리보호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무범위의 한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인탐정은 의뢰인과의 계약 체결 등 지속적인 법률행위의 범주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죄성립에 관한 형법의 기초 이론도 필요하다. (강동욱, 2018) 따라서 탐정업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허가와 관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조직과 충분한 인원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직업창출 및 관리 차원에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강동욱, 2018)

물론 당장 이를 위한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탐정법을 제정함에 앞서 이들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동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명문을 구체화시킨다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의 불법영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탐정행위와 관련된 법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등을 들 수 있다.

4) 공인탐정업의 명확화

탐정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탐정유사업은 건전한 탐정업의 정착과 발전에 해를 가져오고 이를 전면 금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탐정을 도입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탐정과 유사한 업종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공인탐정업에 대한 명확한 업무를 법안으로 제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참고하여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공인탐정자격의 면제기준에 있어서 일반인들은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시 직업윤리, 인성, 전문성을 면접 또는 구술, 필기 전형 시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을 검찰, 경찰 출신은 집중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자세,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업무자세의 연속성과 경제이익,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여 교육을 철저하게 하게 된다면, 탐정업무의 객관적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인탐정의 업무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등 관련 법률에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V. 결론

탐정을 통한 사생활 조사와 정보조사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무차별적인 사생활 침해의 위협에 놓일 염려가 크며, 경찰청에서 탐정을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탐정의 자격에서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고려하면 경찰과 탐정은 견제와 관리의 관계가 아니라 유착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정승환, 2018)

하지만 경찰은 국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할 수 있지만 공인탐정의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임의수사만 가능하다. 즉

경찰과 탐정의 권한과 조사방식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관련 법안을 통해 이미 법제화 되었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탐정업의 법제화를 통해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개입을 할 수 없는 개인의 문제들에 대하여 민간의 역할확대를 통해 그 공백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음은 여러 논문들에서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탐정업의 허용에 관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지만 여전히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승환, 2018)

탐정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불법업체, 영세업체들의 국민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관심을 등한시 한 채 법률안은 계류중이다.

탐정의 역할은 수사기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일뿐,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처럼 공적인 부분에 대한 범법행위는 그다지 크지 않을것이라 본다. 특히 탐정업을 통해 관련 학과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도 발생하고, 입법의 미비로 인해 불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탐정법은 신속하게 국회의 통과를 기대해 본다. 국내에 다소 활동중인 외국 탐정들과의 우리 탐정업의 발전으로 외국 탐정들과의 경쟁력도 기대하게 되며 합법적인 탐정의 활동으로 시민들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욱 (2014).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법과정책연구**, 13(3), 1051-1077.
- 강동욱 (2018). 탐정제도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20대 국회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29(2), 1-27.
- 강영숙 (2014). 일본 탐정업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경찰연구**, 13(4), 3-34.
- 강영숙, 김태환, 유우중, 이경근 (2009). **탐정(민간조사)학개론**. 진영사.
- 경찰청 (2015). **경찰백서: 이제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사립탐정)도입이 필요합니다**. 경찰청.
- 김계원, 서진석 (2016). 민간조사(탐정) 학과의 교과과정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62, 9-36.
- 김동제, 조성구, 한삼석 (2015).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민간조사 제도 도입의 검토. **입법과 정책**, 7(1).
- 김정규, 강맹진 (2017). 탐정 공인 자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4(2), 53-76.
- 김현동, 이기세, 장동수 (2014). SNS시대의 테러범죄 변화에 따른 민간조사원(탐정) 활용방안. **한국테러학회보**, 7(2), 22-48.
- 송하성 (2014). **공인탐정 민간조사원가이드**. 진영사.
- 승재현 (2017).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제도의 실행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성균, 박상진 (2009).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 산업스파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 199-228.
- 신현주 (2016).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6, 199-228.
- 윤석천, 김태영, 김윤호, 박상철, 김기덕, 박진아 (2016). 2016년 신직업 규제 완화 고용 영향 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 윤재욱 (2016). **공인탐정법안(윤재욱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002216.
- 이상원 (2007). 민간조사(탐정)제도의 도입방향: 경비업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235-253.
- 이상훈 (2018). 신직업으로서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업무영역에 관한 연구: 점진적 영역 확대론과 국가사무 아웃소싱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성용 (2015).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입법정책과 자격시험·교육의 구체화 방향**.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완영 (2017).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완영 의원 등10인)**. 의안번호 2007974.

- 이점인 (2018).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동아법학*, 78, 153-208.
- 장석현, 송병호 (2008). 민간조사업 도입상의 쟁점분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8, 333-365.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민간조사업법 검토의견서*.
- 항병돈 (2009). *사설탐정제도의 효과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 황요한 (2017).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헌법재판소 판례 2000.4.27. 97헌바88
- <https://www.lawtimes.co.kr/>(공인탐정법의 입법추진을 중단되어야한다, 정승환)/ 2019년 10월 1일.
- <https://www.kli.re.kr/eia/index.do/2018.12.30>.

【Abstract】

A Study on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Kim, Bong-Soo · Choo, Bong-Jo

In the bill of [Act on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rtified Detective Act) proposed and represented by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Lee Wan-Yong in 2017,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showed that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including new crimes, are frequently increasing as society develops and becomes more complex, however, it is not possible to solve all the incidents and accidents with the investigation force of the state alone due to manpower and budget, and therefore, a certified detective or private investigator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June 2018, Article 40 (4)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is concerned with 'finding the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of a specific person or investigating privacy other than commerce relations such as financial transactions' are prohibited. It i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illegal acts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such as the location, contact information, and the privacy of a specific person and protecting the privacy and tranquility of personal privacy from misuse and abus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etc.

Such 'privacy investigation business' currently operates in the form of self-employment business, which becomes a social issue as some companies illegally collect and provide such privacy information by using illegal cameras or vehicle location trackers and also comes to be the objects of clampdown of the investigative agency. Considering this reality, because it is difficult to find a resolution to materi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other than prohibiting 'investigation business including privacy etc' and it is possible to run a similar type of business as a detective business in the scope that the laws of credit research business, security service business, the posi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at 'the ban on the investigations of privacy etc' does not infringe the claimant's freedom to choose a job.

In addition to this decision, the precedent posi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been that, in principle, the legislative regulation of a particular occupation was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determined by the legislator'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siderations, unless otherwise there were any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widely recognized the legislative formation rights of legislators in the qualifications system related to the freedom of a job.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focusing on the certified detective bill recently under discussion, and tries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certified detective and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in order to cultivate and institutionalize the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and to suggest methodologies to seek for the development of the businesses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Keywords: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The Certified Detective Act, Article 40 (4)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Service Industry Act, Private Security Industry